

화학사고·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민이 신뢰하는 화학안전 선도기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



목차



I 화학사고 관리 제도

II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III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목차



I 화학사고 관리 제도



화학사고 사례

❖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2020년)



사진출처:네이버카페



■ 사고내용

- ▶ 2020년 8월 4일 오후 6시경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 선착장에 있는 한 창고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
- ▶ 레바논 정부는 사고 이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는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을 거론

■ 위기

- ▶ 항구에 있던 곡물창고들이 파괴, 항만 교역의 80%를 담당하는 기능이 마비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수출입에 큰 차질
- ▶ 2019년부터 레바논 화폐가치 하락으로 곡물 수입이 줄어든 데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https://tv.naver.com/v/21757127>

화학사고 사례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사고



■ 시안화나트륨

- > 물류창고 보관중이던 시안화나트륨이 초대형 폭발사고로 대부분 사라짐
- > 시안화나트륨 700ton중 150ton만 회수
- > 사고지점 주변 공기, 토양,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
- > 사고 주변 곳곳의 토양과 수질이 시안화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 확인

■ 오염정도

- > 경계지역 내 26곳 측정결과 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시안화물 검출(기준치의 최대 356배 초과)
- > 오염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변 배출구를 모두 봉쇄했다고 설명, 그러나 폭발현장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대량의 물고기 사체가 발견
- > 중국 환경당국은 물고기 떼죽음은 이번 폭발과 관련없다고 결론, 시민들은 그럴줄 알았다고 불신



사진출처:네이버카페



화학사고 사례

참고자료: 화학사고 사례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3

❖ 불화수소 누출사고('12.9월 구미시 000사업장)



본 사고사례 연구는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35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주)○○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고 피해현황('12.10.11.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종합상황)

- 인적피해 : 사망 5명(○○글로벌 4, 타사 1), 입원치료 12명, 건강검진 7,162명
- 물적피해 : 농작물 237.9ha, 가축 3,209두, 차량 1,138대, 기타 215건 등

화학사고란?

정의

-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하여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 영향을 주는 상황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화학사고 관리 제도

화학물질 관리 법률의 변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 1963.12.13 (제정)

· 약 80종의 독물,극물의 제조,수입,판매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990. 8. 1 (제정)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
· 유독물, 특정유독물 지정,관리

● 1996.12.30 (전부개정)

· GLP제도 도입, 관찰물질지정
· 유통량,배출량 조사, 특정유독물 폐지

● 2004.12.31 (전부개정)

· 배출량결과 공개
· 위해성평가 도입, 사고대비물질 지정

● 2007.12.27 (일부개정)

·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분리, 명확화

● 2011. 2.25 (입법예고)

· 환경부 화평법 입법예고

● 2012. 2. 1 (일부개정)

· 자체방재계획 변경 제출 명령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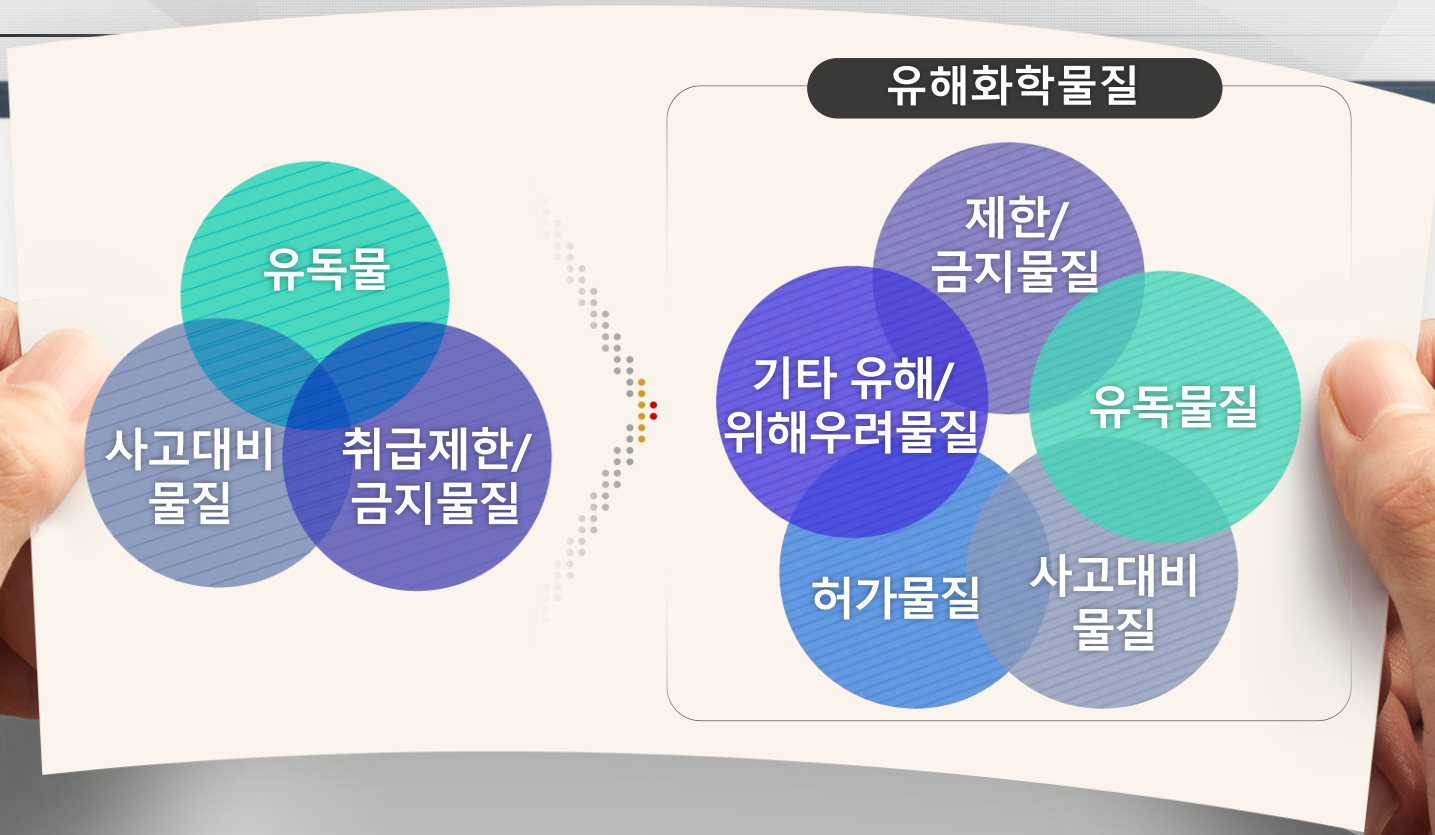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2015년 시행)

● 2013. 5.22 (제정)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시행)

● 2013. 6. 4 (전부개정)

1 화학사고 관리 제도



- 유독물 : 등록 (지자체)
- 취급제한금지물질 : 허가 (환경부)
- 사고대비물질 : 규정없음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허가(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의무 강화)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1 시행)

화학사고 사전예방 제도 일원화(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설)

- »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작성 내용 중복을 해소하여 사업장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 사고대비물질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도 화학사고 예방·대응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지방자치단체 의무 강화

- » 관할지역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의무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 또는 시책 수립·시행
- ✓ 화학물질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 또는 시책 수립·시행
- ✓ 화학물질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계획
→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표지판 설치 등
- ✓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계획
→ 긴급구호물자, 응급의료지원 등
-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 ✓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대응 협의체계
- ✓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 ✓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 보완
- ✓ 지역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공개



1 화학사고 관리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외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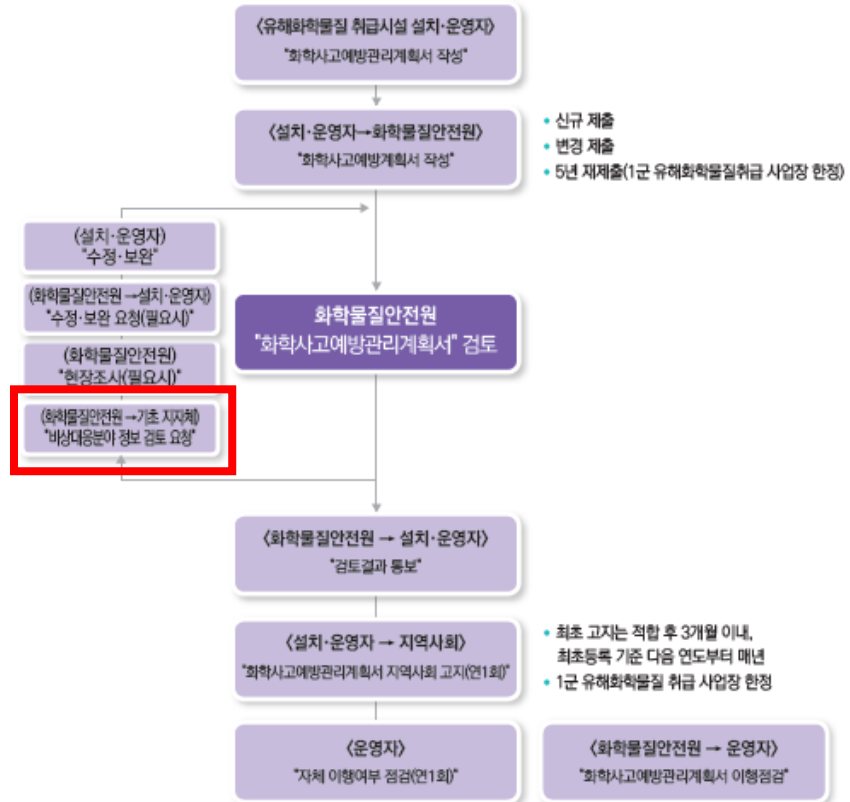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또는 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① 1군 : 상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 ② 2군 : 하위 규정수량 이상~상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
- ③ 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 절차



1 화학사고 관리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에서 지자체 역할

검토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이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응분야,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현장조사*와 이행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행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의 지역사회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누리집 게재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업장이 작성·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주민의 소산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활용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수립하여 관할 지역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이 외부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차



II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말합니다.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 주변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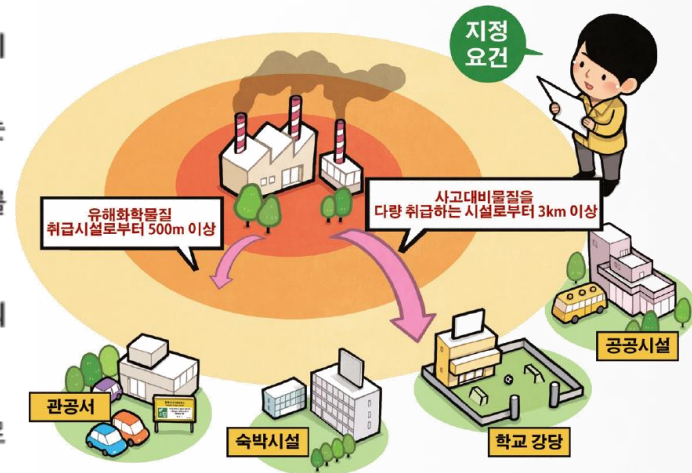
> 화학물질 누출 확산, 화재·폭발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로부터 최소 3k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화재, 연쇄 폭발, 붕괴, 수계·대기오염 등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의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부에 노출된 학교 운동장, 공원 공터 등 옥외 공간은 제외합니다.
- 공기보다 무거운 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하여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 건물 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역사 등 제외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요건

규모 적정성 >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 현황, 주변 화학사고 대피장소 수용규모, 재해약자 등을 충족하는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 접근성 >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예) 학교 강당, 체육관, 교회, 마을회관, 경로당, 숙박시설, 관공서, 공공시설 등
- 상시 비상출입이 가능하도록 민간시설보다는 공공시설 지정을 권장합니다.

대피가능 인원 및 면적 > 민방위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대피면적 내 수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1인당 소요면적은 0.825m²을 적용합니다.
※ 대피장소는 공간 활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1인당 소요면적을 축소·확대하여 적용 가능
예시) 5,000m²(대피장소 면적) ÷ 0.825m²/인 = 6,060명(대피가능인원)

초기 대피 집결지 확보 > 화학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주변의 근로자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집결지에 대피하고, 최종 화학사고 대피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단계적 대피방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집결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전에 선정한 집결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 행정구역 경계에 타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 해당시설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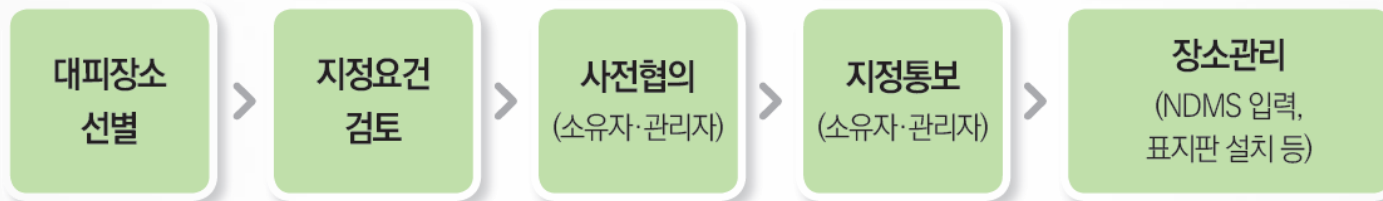
> 화학사고 규모 확대로 지역 내 지정된 대피장소 활용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대피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대피장소 지정



1 (대피장소 선별)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지역주민의 접근성, 기본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장소를 선별합니다.

※ 읍·면·동별 거주하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확보

2 (지정요건 검토) 대상 장소별 기본요건, 규모의 적정성,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지정요건 적정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사전 협의) 대피장소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대피장소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협의 시 안내표지판 설치·부착, 위치정보 공개, 출입문 개방(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또는 지자체 요청 시) 기준 등 사전안내

4 (지정 통보) 화학사고 대피장소 확정 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5 (장소관리)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대피장소명, 대피가능 인원, 대피면적, 위치·위경도 등 관련 현황 정보를 국가재난 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대피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확보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

(예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

대피장소명	
위 치	주소 및 위·경도
수용가능인원/대피면적	명 / m ²
사용 시기	화학사고 발생 시 등
협조 사항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출입문 개방

※ 상기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피장소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상기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부착) 등을 동의(협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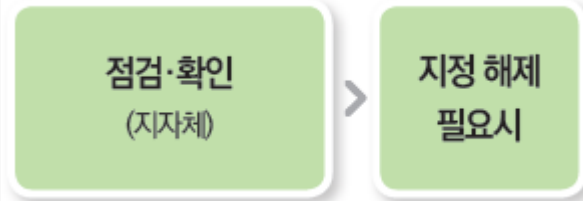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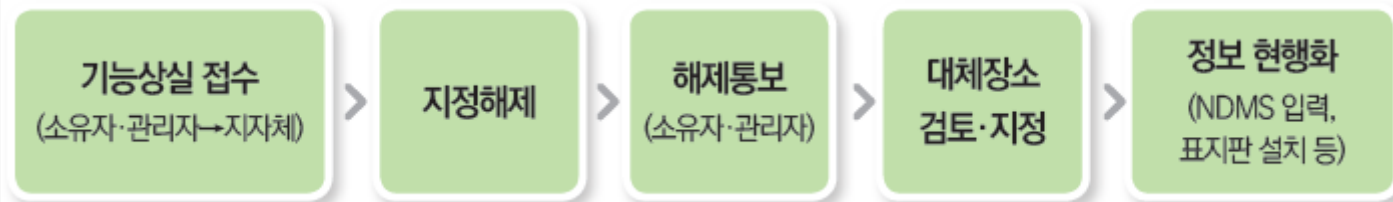
동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해제



① (기능상실 접수) 대피장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용도변경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상실이 예상될 경우에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피장소 지정 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설명 필요

② (지정해제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는 대피장소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대피장소 지정을 해제하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대체장소 검토 및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대피장소 지정을 해제할 경우, 대체장소 선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체 대피장소 지정이 요구됩니다.

④ (정보 현행화)

- 지정해제 및 대체 지정 대피장소 정보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에 입력하고,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대피장소 지정해제 시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고, 대체 지정 대피장소에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 대피장소 관리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대피장소가 상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관리책임자 : 시·군·구별 총괄 책임자 등, 관리자 : 해당시설 및 지역현황을 잘 아는 읍·면·동 직원 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출입문의 신속한 개방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자와 시건장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역할 뿐 아니라 야간·휴일 등 대피장소 출입문이 닫혀있을 경우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시건장치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 부여가 필요합니다.
 - 출입문의 신속한 개방을 위해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현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 대피장소 안내요원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무와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대피장소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시건장치 담당자 등을 포함시키거나, 이장·통장,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현황을 잘 아는 지역 대표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재해약자의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안내요원 지정이 필요합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 대피장소 정보 현행화

- 대피장소명, 대피가능 인원, 대피면적, 위치·위경도 등 관련 현황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의 상시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 대피장소별 지정된 관리 책임자, 관리자, 안내요원 등의 연락처 정보의 상시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시설물 관리자(시건장치 담당자) 등과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학사고 관련 주요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과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화학사고 대피장소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도록 합니다.
- 지정 현황이 변동될 경우, 관련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에 즉시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목차



III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3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종류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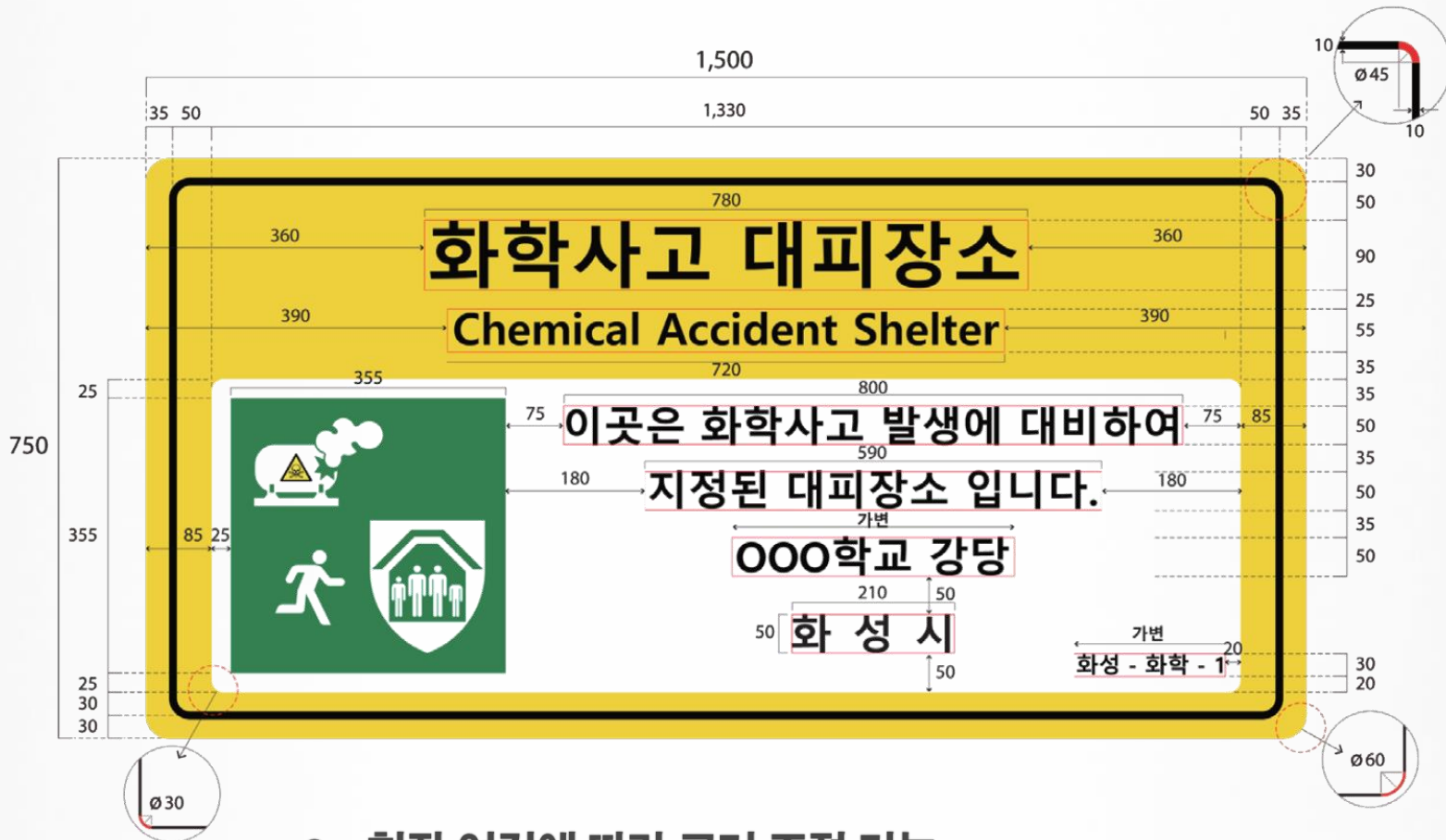
방향표지판



- (안내표지판)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
- (방향표지판) 주요 교차로 등 방향 안내가 필요한 장소

3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규격



- 현장 여건에 따라 크기 조절 가능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시범사업 사례

○ 화학사고 대피장소 선정 지원 도구

화학물질안전원

주소: 192.168.0.109:6070/nics/web/main/mainPage.do

검색항목: 검색어

전체

사업장영역: 전체

3Km + 0.5Km 0.5Km

검색

대피장소 목록

가곡 [12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다솔3로 48	
수용인원: 12명, 면적: 33.00 m ²	
가득초등학교 [강당]	<input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세종로 941(새롬동)	
수용인원: 166명, 면적: 63.00 m ²	
가락초등학교 [체육관]	<input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마운동 208(고운동)	
수용인원: 691명, 면적: 265.00 m ²	
감성리 경로당 [본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감성길 45	
수용인원: 68명, 면적: 26.00 m ²	
감성초등학교 [강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감성길 6	
수용인원: 594명, 면적: 228.00 m ²	
고북1리마을회관 [본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도신고북로 1061	

대피장소 관리

청남도

3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시범사업 사례

○ 화학사고 대피장소 선정 지원 도구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displaying a web application for selecting evacuation sites. The browser address bar shows the URL: 192.168.0.109:6070/nics/web/sht/shelterManager.do. The application interface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 Left Sidebar (List of Sites):** A vertical list of potential evacuation sites, each with a name, address, and area. The first site is highlighted in green.
 - 가곡1리마을회관 [본관] (Area: 18,000 m²)
 - 고성1리마을회관 [분관] (Area: 26,000 m²)
 - 고성2리마을회관 [분관] (Area: 228,000 m²)
 - 고성3리마을회관 [분관] (Area: 237,000 m²)
 - 고성4리마을회관 [분관] (Area: 284,000 m²)
 - 가곡초등학교 [강당] (Area: 63,000 m²)
 - 가곡초등학교 [체육관] (Area: 265,000 m²)
 - 감성리 경로당 [분관] (Area: 45,000 m²)
 - 감성초등학교 [강당] (Area: 228,000 m²)
 - 고북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2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3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4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5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6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7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8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1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2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3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4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5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6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7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8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99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고북100리마을회관 [분관] (Area: 18,000 m²)
- Center Form (Site Details):** A form for entering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site.
 - 대피장소명: 가곡1리마을회관
 - 대피장소 상세주소: 1223
 - 대피장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
 - 대피장소 수용인원: 12
 - 대피장소 면적: 33
 - 대피장소 지정일: 123
 - 대피장소 분류: 연수, 숙박
 - 대피장소 위도: 36.49849624309919
 - 대피장소 경도: 127.26797873655076
 - 3Km: 3Km 영역 이외
 - 0.5Km: 500m 영역 이외
 - Buttons: 저장, 삭제, 초기화, 엑셀 다운로드
- Right Map:** A map showing the selected site (highlighted in orange) and surrounding area. The map includes labels for various locations, roads, and landmarks. The selected site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Daesom 3-ro and Gogok 1-ri.

3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시범사업 사례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울산 울주군 응촌문화복지센터



울산 남구 신정4동주민센터



여수 여천초등학교 강당, 교실



서산 대산초등학교 강당

화학사고 재난관리 역량평가 준비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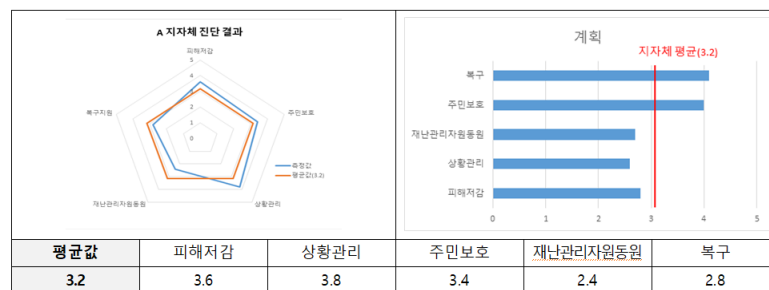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주관 화학사고 재난관리 역량평가 시행

- 기존 평가제도의 특정 재난 사고의 대응역량 파악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역량 중심의 재난관리평가 시행
- 핵심역량은 5개로 분류(피해저감, 상황관리, 주민보호, 재난관리자원 동원, 복구)
- 진단영역은 5개로 분류(계획, 조직, 장비, 교육, 훈련)

재난 유형별 (화학사고) 재난관리 역량 진단 항목(안)

2021.

<역량 중심 재난관리평가 결과 예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